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1. 3. 6.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2월 26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1년 2월 26일
- 다. 상정일자 : 제78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2001. 3. 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교통지도과장 윤 회 용

가. 제안이유

주차장법(2000. 1. 28 법률 제6234호) 및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2000. 11. 30 조례 제3800호)가 개정되어 공포·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된 상위법규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현행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최초 30분 기본요금과 2시간초과 주차시 가중요금을 적용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10분단위로 징수하도록 규정함. (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 개인택시 등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영노외주차장 이용을 위한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 이용실적이 미미하거나 이용기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부계은행차량, 카풀차량에 대한 감면제도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한 1시간 면제제도를 폐지하고,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및 지하철환승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감면을 확대함. (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 주차요금을 장기·고액 미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차량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 (안 제2조의2)
-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할 수 있는 대상에 마포구가 설립한 공기업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을 추가하여 규정함. (안 제4조제1항)
-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관리수탁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안 제4조의2)
-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및 노외주차장 위치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식별이 용이하고 편리하도록 규격·문안·재질 등을 개선함. (안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
- 주차장법 개정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과 무상사용노외주차장 사용권리 부여시의 감액기준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 (안 제21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등 개정조례안은 2000.1.28 주차장법이 개정되고 2000.11.30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등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 조례와의 차이로 인하여 이용시민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는 사항과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에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시간단위가 현행규정에는 최초 30분 기본요금과 초과 10분단위로 되어 있는 요금체계를 10분단위로 세분화하였으며 주차요금 감면제도도 주차요금체계 조정과 병행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은 현행 50%할인에서 80%할인으로 조정하고 부제운행차량과 카풀차량에 대한 감면제도는 폐지하였으며 지하철환승주차장 이용자에 대하여는 감면을 확대조정하였음.

○ 안 제2조의2에서는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3회이상 주차요금을 체납한 경우나 10만원이상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납한 경우에는 운행제한장치(바퀴체움제)를 설치할 수 있는 제재방안과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제비용 3만원을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에서는 조 제목을 “공영노상·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에서 “공영주차장의 위

탁관리”로 개정하고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도 구가 설립한 공기업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에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포괄적 기준에서 비교적 구체적 기준으로 규정하였음.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의 관련규정을 주차장법과 서울시조례의 개정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용어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신설규정인 안 제2조의2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안 제2조의2 신설규정은 노상주차장의 관리와 주차행위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주차장법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의2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동 조례안에 규정한 것으로는 사료되나, 주차요금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시민에게 지나친 불편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별지 안 제1호 서식과 안 제3호 서식에 규정된 주차장안 내표지판은 이용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격과 문안 등을 서울시와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표지판 교체에 따른 소요 예산은 200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1,6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요지(정형기 위원) : 10분 단위 요금징수는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아닌가?
- 답변요지(윤희용 교통지도과장) : 기본요금이 없으므로 경감효과 있음.
-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 차량운행제한장치 설치와 같은 내용의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답변요지(윤희용 교통지도과장) : 서울특별시조례를 근거로 규정하였음.
- 질의요지(유용봉 위원) : 장애인 80% 경감의 경우 해당되는 장애등급은?
- 답변요지(윤희용 교통지도과장) : 1~6 등급이 해당됨.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 의 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1. . .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주차장법(2000.1.28 법률 제6234호) 및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2000.11.30 조례 제3800호)가 개정되어 공포·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된 상위법규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현행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최초 30분 기본요금과 2시간초과 주차시 가중요금을 적용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10분단위로 징수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나. 개인택시 등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영노외주차장 이용을 위한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다. 이용실적이 미미하거나 이용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부제운행차량, 카풀차량에 대한 감면제도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한 1시간 면제제도를 폐지하고,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및 지하철환승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감면을 확대함.(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라. 주차요금을 장기·고액 미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차량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안 제2조의2)

마.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할 수 있는 대상에 마포구가 설립한 공기업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1항)

바.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관리수탁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의2)

사.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및 노외주차장 위치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식별이 용이하고 편리하도록 규격·문안·재질 등을 개선함(안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

아. 주차장법 개정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과 무상사용노외주차장 사용권리 미부여시의 감액기준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21조의3)

3. 근거법령

가. 주차장법(2000.1.28 법률 제6234호)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

나. 주차장법시행규칙(2000.7.29 건설교통부령 제251호)으로 삭제된 종전 제14조

다.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2000.11.30 조례 제3800호)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01.1.31~2001.2.20)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나.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01. 2. 23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주차카드”를 “주차쿠폰”으로 하며, 동조동항중 제2호 내지 제9호를 제3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을 당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 받은 경우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①구청장은 공영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당해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당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당해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후 구청장에게 차량운행제한장치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의 해제요청이 있으면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차량에 한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해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차량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한 때부터 장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해제비용 미징수
2.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해제비용 3만원 징수

제4조 조제목 “공영노상·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를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로 하고, 동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구가 설립한 공기업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자
3.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수수료는 매분기말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교부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4조의3(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관리수탁자는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수 있다.

②관리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지하철 등 타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및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 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설립·운영하는 법인의 주차카드 발행 및 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와 동일한 구청장의 지도·감독권 행사 대상이 되는 것과 구청장의 지도·감독에응할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감독권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를 사용하는 방법

④구청장은 주차장별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관리수탁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3항중 “노외주차장”을 “공영노외주차장”으로 각각 한다.

제14조제1항중 “서울특별시마포구”를 “구”로 하고, 동조제3항중 “노외주차장”을 “공영노외주차장”으로 한다.

제21조 조제목 중 “공영주차장”을 “공영노외주차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영 제10조제1항”을 “영 제10조제2항”으로 “공영주차장”을 공영노외주차장”으로 한다.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①제21조의3의 규정은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 하는데 적용한다.

②제21조의3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영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공영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21조의3(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 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을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 한다.

②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와 법 제19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1로 감액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 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2조 관련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0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 및 제14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노외주차장 위치안내표지판”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탁 공영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 위탁계약기간 만료시까지의 종전의 요금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 제2조의2 개정규정에 의한 차량운행제한장치 설치대상이 되는 주차요금의 체납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되는 주차요금 체납분부터 계산하여 적용한다.

제4조(표지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의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및 공영노외주차장 위치안내 표지판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 위탁계약기간 만료시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표지판으로 교체 설치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원-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공 영 노 외 주 차 장		
	1회주차시 10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 정 기 권		1회주차시 10분당	월 정 기 권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1급지	1,000	5,000	-	-	800	250,000	100,000
2급지	500	4,000	-	-	500	180,000	60,000
3급지	300	3,000	-	-	300	100,000	40,000
4급지	200	2,000	50,000	-	200	환승목적주차시 : 40,000 기 타 : 50,000	20,000
5급지	100	1,000	30,000	20,000	100	30,000	20,000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 정기권 요금은 4만원으로 함.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 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 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장으로써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신촌지역 : 경의선철도·경의선철도와 대흥로를 잇는 도로·대흥로·용산선 철도·양화로 및 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주차장

나. 2급지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중 상업·업 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다. 3급지 :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4급지 : 지하철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 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 5급지 : (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 환승주차장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1·2·3·4급지 주차장 중 야간주차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장

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3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시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구청장은 개인택시·개별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7.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 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8.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2·3·4·5급지 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9.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해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0. 2급지 및 3급지 지역의 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의 주차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4급지의 환승목적 주차시의 월정기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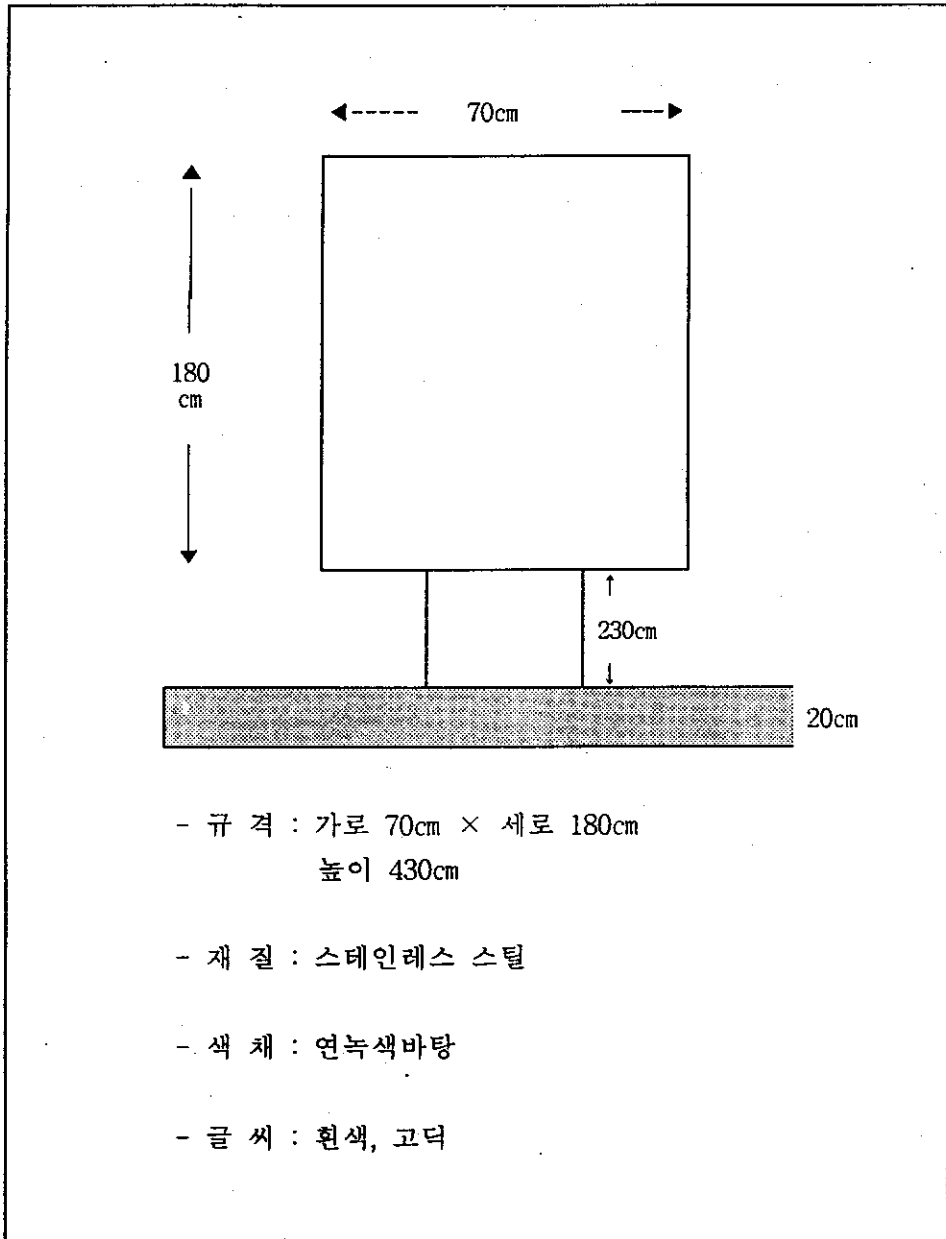
11. 2내지 5급지 지역의 공영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환승목적으로 주차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시 제출하면 당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2.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국세청장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교부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4.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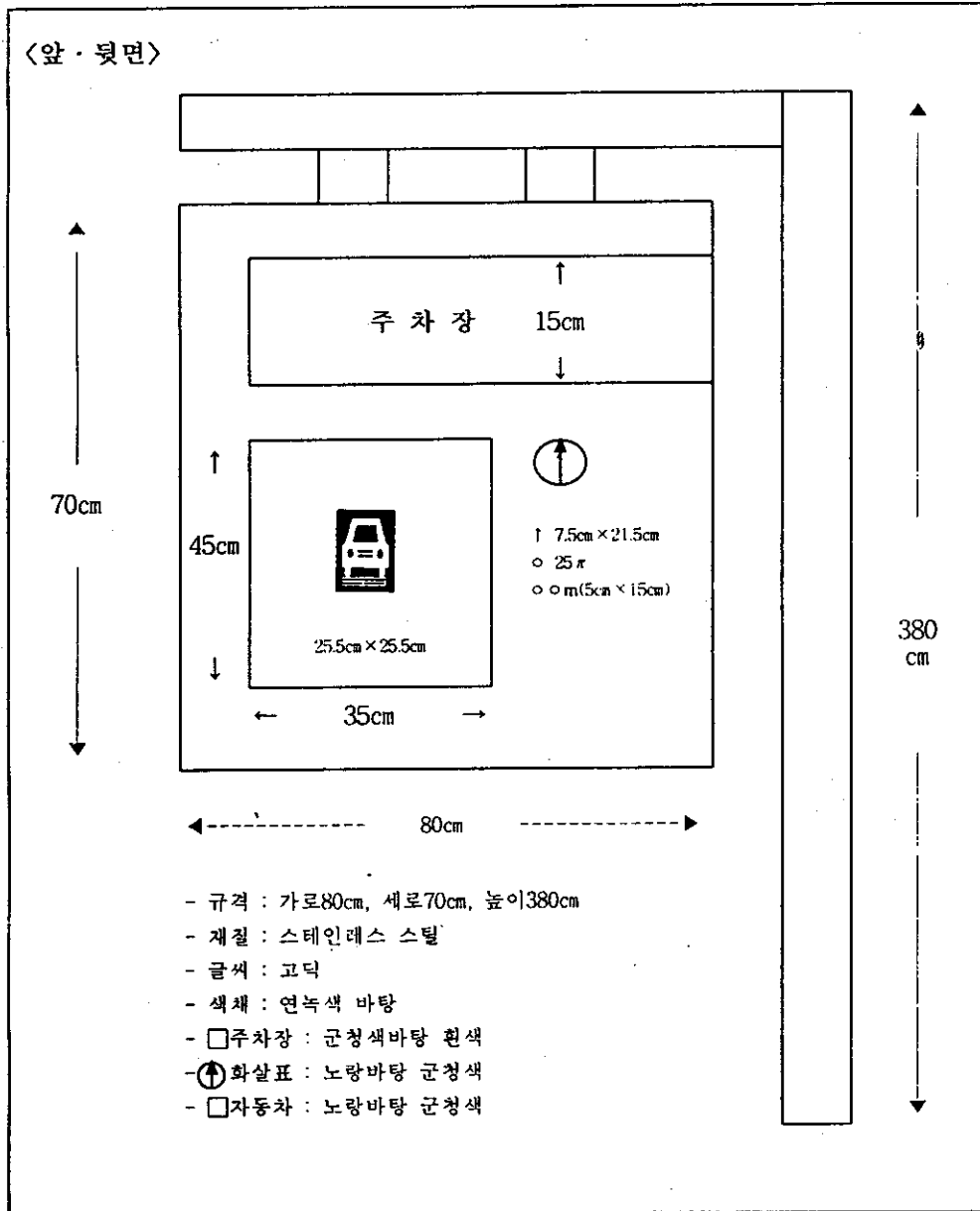
[별지 제1호 서식]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제10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노외주차장 위치안내표지판(제14조제3항 관련)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노상주차장 및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중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당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당해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p> <p>1. 주차카드 및 주차시간측정계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한다.</p> <p>(신설)</p> <p>2.~9.(생략)</p> <p>(신설)</p>	<p>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을 당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 ----- -----</p> <p>1. 주차쿠폰----- ----- ----- -----</p> <p>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 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 받은 경우</p> <p>3.~10.(현행 2.~9.와 같음)</p> <p>제2조의2(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①구청장은 공영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당해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당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제4조(공영노상·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 ①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 1과 같다.</p> <p>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마포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당해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후 구청장에게 차량운행제한장치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의 해제요청이 있으면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차량에 한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p> <p>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해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차량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한 때부터 장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해제비용 미징수</p> <p>2.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해제비용 3만원 징수</p> <p>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의 관리를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p> <p>2. 구가 설립한 공기업</p> <p>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자</p>

현행	개정안
<p>2. 구청장이 <u>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u></p> <p>②(생략) (신설)</p> <p>(신설)</p> <p>(신설)</p>	<p>4.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 <u>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u></p> <p>②(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u>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수수료는 매분기말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교부한다.</u></p> <p><u>제4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u>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u>지도·감독한다.</u></p> <p><u>제4조의3(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u> ①관리수탁자는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u>주차요금을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수 있다.</u> ②관리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지하철 등 타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u> ③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및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등 <u>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 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u> ④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u>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설립·운영하는 법인의 주차카드 발행 및 운용과 관련되는 사항</u></p>

현행	개정안
<p>제6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징수방법)① 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 1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1.(생략)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p> <p>3.(생략) ②~③(생략) (신설)</p> <p>(신설)</p>	<p>에 대하여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와 동일한 구청장의 지도·감독권 행사 대상이 되는 것과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감독권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6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징수방법)①</p> <p>----- ----- ----- -----</p> <p>1.(현행과 같음) 2.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는 방법 3.(현행과 같음) ②~③(현행과 같음) ④구청장은 주차장별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관리수탁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7조(주차카드의 판매등) ①제6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카드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판매를 할 수 있다.</p>	<p>(삭제)</p>

현행	개정안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카드의 수탁 판매 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수탁판매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전 구매한다.</p>	
<p>제12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징수 방법등) ①~②(생략) ③공영노외주차장의 개인택시·개별용달 또는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 요금은 별표1의 노외주차장의 월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4·5급지 주차장의 요금은 별표1의 노외주차장의 월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30퍼센트를 할증한 후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제12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징수 방법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 -----공영노외주차장----- ----- -----공영노외주차장----- ----- -----</p>
<p>제14조(주차장의 표시)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 그 표지상단에 서울특별시마포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노외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위치안내 표지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p>	<p>제14조(주차장의 표시) ①----- ----- -----구----- ----- ②(현행과 같음) ③공영노외주차장----- ----- -----</p>
<p>제21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달부터 별표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생략)</p>	<p>제21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 ①영 제10조제2항----- -----공영노외주차장----- ----- ----- ②(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신설)	<p>제21조의2(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① <u>제21조의3의 규정은 부설주차장의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을 산정 하는데 적용한다.</u></p> <p>②제21조의3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u>”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감응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담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u>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u>”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u>무상사용노외주차장</u>”이라 함은 영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공영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신설)	<p>제21조의3(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p> <p>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한다.</u>

현행	개정안
	<p>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 한다.</p> <p>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p> <p>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 한다.</p> <p>②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하여 부설주차장의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와 법 제19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1로 감액한다.</p> <p>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시설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한다.</p> <p>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 한다.</p>

현행	개정안
	<p>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p> <p>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p>